▮ 발제 3 ▮

주민소환제의 정착과제12)

성태규(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 문제제기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초로써 우리나라에서는 건국헌법에 의해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인해 지방자치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1995년에야 다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어 전면적인 지방자치제가 복원되었다.

지방자치가 부활함에 따라 지역의 정치·행정에서 주민의 참여도 활성화되었다. 민선5 기 충남에서는 도민과 열린 대화, 도정 모니터 운영 등 거버넌스 시책을 추진하여 주민참여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지방분권촉진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분권의 추진에 관한 기본원착추진과제·추진체제 등을 규정하여 지방분권의 추진과제를 종합적·체계적계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동법은 14조(주민참여의 확대)를 통해주민참여확대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의민주주의제도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한 주민의 직접참여제도가 도입되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바람직한 변화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결과로 초래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비리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고, 근자에 들어 지방의 재정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재정지출과 지역개발 사업을 일으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주민의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현상도 비판되고 있다. 이와 같은 폐해를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차단하는 방법으로 주민투표제, 주민소황제, 주민소황제 등이 있다. 본고에서 는 이 가운데 주민소화제에 논의의 범위를 국한하고자 한다.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시행 이후 지방의원 2명에만 소환이 이루어져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많은 주민들은 자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작경제적인 개발과 지역현안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의 공익에 관련된 현안에 관심을 적게 갖는 성향이 있다. 주민에게는 자신들의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중앙지방정부의 더

지방자치 20년 기념 토론회

많은 지원을 얻으려는 심리도 갖고 있는 반면, 즉흥적·일회성 행정의 낭비를 막는 데에는 적은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다. 어떤 측면에서는 주민의 참여의식이 부족하여 주민과 지자 체와의 관계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주민소환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주민소환제가 합목적적인 지방자차주 민참여의 기제로 작동하기 위한 과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Ⅱ. 주민참여의 개념과 종류

주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 la participation des citoyens)는 다의적 개념이다. 그것은 학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13)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의 일반시민이 공적으로 결정권이 부여된 자들에게 정책이나 계획의 결정에 관하여 영향력을 미칠의도로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정세욱, 2005: 372). 이렇게 정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가 내재돼 있다.

- 일반주민으로 표현되는 참여의 주체가 그 지역사회의 구성원인 비엘리트주민들이다.
- 공적으로 결정권이 부여된 자들에게 하는 행위이다.
- 정책이나 계획의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이다.
- 영향력을 미칠 의도로 하는 행위이다.
-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능력, 즉 권력이다.

주민의 지위도 변화하고 있다. 주민(시민)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자연인/법인을 불문하며, 또한 국적/인종/연령/행위능력을 묻지 않고 주민이 된다. 일반적 시민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고려해 볼 수 있다(이원희 2004).

- 소비자(customer)로서의 시민: 소비자로서의 시민은 계약에 의한 공공서비스를 중시 하며 수동적 지위를 갖게 된다.
- 소유자(owner)로서의 시민 : 소유자로서의 시민은 주권을 행사하는 지위이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뒤따르는 한계가 있다.

¹²⁾ 본고는 문제제기의 수준에서 작성한 초고이므로, 인용을 위해서는 저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¹³⁾ 주민참여란 "공권력이 부여되지 않은 일반시민들이 공적 권한이 부여된 사람들의 행위에 영향력을 미칠 의도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Sidney Verba, 1967 : 53) ; "지역사회의 일반시민이 그 지역사회의 일반적 사항과 관련된 결정에 대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보아 주민참여의 본질적 요소로 일반시민(common amateurs), 권력(power), 결정(decision)을을 들고 있다(J.V. Cunningham, 1972 : 595).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의도하는 일반주민의 행위"(S.P. Huntington, 1976 : 5)로 보고 있다.

- 가치중심(value-centered)의 시민 : 지역의 발전을 위해 공동 투자하는 가치형성자로 서의 지위를 가진다.

그런데 최근의 지방행정환경변화에 따라 정부와 시민이 협력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창출해야 하는 governance의 성격으로 볼 때 가치중심의 시민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오늘날 자치행정의 기능은 점차 확대되어 복잡, 전문화되고 있어, 그수행을 위한 효율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서비스의 공급과 결정과정에 주민의견이 존중되어 처리되어야 하는 민주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방자치시대 바람직한 주민의 지위는 '가치중심의 주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주민참여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도입된 주민참여제도 는 대체로 18가지로 소개되고 있다.(육동일, 2008 : 22) 그러나 주민소환제와 맥락을 같이하는 지방자치정신에 부합한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서 주민이 행하는 참여는 아래에서와 같이 지방형 참여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주민참여의 종류〉

	자율적 참여	국가형 참여	청원(국가기관에 제출하는 일반청원) 국민제안 참여 감사원 감사청구 국민고충신청 국회정원	
		지방형 참여	주민투표 청구(주민이 청구하는 경우) 조례 제/개정 청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청구 주민제안 지방의회 청원 주민참여예산제도	
	제도적 참여	참정형 참여	공직자 선거참여 국민투표 참여 주민투표 참여(국가, 자치단체장이 요청한 경우)	
		행정형 참여	주민의견수렴 참여 공람, 공고참여	

33

지방자치 20년 기념 토론회

Ⅲ. 주민소환제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

1. 필요성

34

충남지역에서는 지난 민선 4기 동안 3건의 기초단체장 비리가 적발되었다. A 전 군수는 관내 기관장으로부터 군이 추진하는 사업을 자신이 일부 소유한 부지에 건립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 구속되었다. A 전 군수가 소속된 지자체에서는 공무원들이 거짓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빼돌리다가 적발되었다. 지난 2008년에는 B 전 군수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수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하였다. C 전 군수는 공사를 수주 받은 관내 건설업체 사장으로부터 별장을 뇌물로 받는가 하면 아파트를 추가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수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받다가 적발되었고,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가 검거되어 주민들을 허탈감에 빠지게 하였다.

지방자치의 부작용으로 지방재정의 파탄이 문제되고 있다. 재정이 파산직전까지 간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점은 방만한 예산 집행이다. 부문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이에 대한 예방이 시도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피해는 주민에게로 귀속되고 있다. 성남시는 공원조성사업(8600억원), 신청사 건립(3222억원), 공원로 도로확장공사(4000억원) 등으로 지방채 지불유예를 선언하였다. 대전시 동구청, 부산시 남구청도 무리한 신청사건립으로 직원 인건비도 마련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2009년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방채 잔액은 국가 전체 예산 206조의 12%인 25조5537억원에 이르고 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각종 선심성 공약과 개발이 난무하게 되어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의 피해로 귀결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지방자치가 확립된 국가에서 주민소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자치 단체장과 의회의원에 대해 '해직청구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해직 여부를 주민의 찬반투표로 결정하는 것으로,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제도는 1947년부터 1996년까지 총 242건의 의원 해직이 청구돼 해질 63건, 투표전 사직 55건을 이끌어 내어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의회 전체가 주민의 의사에 유리되거나 이에 반하는 사태를 초래한 경우 현 의원전체의 자격을 박탈하는 '의회 해산청구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 역시 의회 해산의 가부를 주민의 찬반투표로 결정하며, 이 투표결과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는 해산된다.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 당시 일부 주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소환을 인정한 적이 있었으나 나치정권 이후 폐지되었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지방자치법 정비과정에서 지방의회에 의한 단체장 해 직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지난 1994년 개정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소환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2. 주요 내용

주민소환제는 2006년 선출직 지방공직자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비라부패 등을 막기 위해 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주민소환제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유권자의 고발, 청원, 투표의 방법으로 선출직 공직자를 해임·교체하는 직접 민주주의 절차이다. 문제를 일으킨 공직자를 임기 내에 해임함으로써 문제 상태를 빨리 해결하고 더이상 발생할 주민 권익의 침해와 손실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핵심 내용은 지방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임기 중 위법 · 부당행위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을 저지를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주민들이 이들을 소환하고 주민투표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민소환제도의 실행은 정부기관이 아닌 소환청구자의 청구활동과 소환대상자의 반대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이 소환관련 행정업무를 집행한다.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절차는 「주민소환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주민의 권익과 공익에 반하는 선출직 공직자가 발생하면, 주민들의 비판여론과 함께 공론화과정에 들어간다. 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해결 수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민은 주민소환에 돌입할 수 있다. 주민소환의 제기는 주민소환을 주도한 개인 또는 단체나 집단의주민소환 주창, 소환청구인 대표의 선정, 그 수임인의 모집과정을 거쳐 법률에 규정된 주민소환절차를 밟게 된다. 법에 따라 소환청구인대표의 신청과 교부, 서명요청활동, 소환투표청구, 소환투표청구심사 및 소환투표 발의, 주민소환투표운동, 주민소환투표실시, 개표및 투표결과확정의 순으로 진행된다.

우리나라 주민소환제의 특징으로는 첫째, 주민소환의 사유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 주민소환의 사유에 대해 우리나라의 법은 구체적인 사항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부패, 무책임,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독선이나 전횡 등 다양한 사유로 주민소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주민소환제를 먼저 도입한 일본, 독일 등에서도 주민소환의 사유에 대해서는 법률로 구체화되지 않았다.

둘째, 주민소환투표의 실시청구를 하려면,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20%에 이르는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소환을 청구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5% 이상, 시도의회의원 및 자치구 사군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특별법에서는 20~30%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 20년 기념 토론회

셋째, 주민소환투표의 실시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제한을 비교적 장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률에 의하면 임시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와 임기만료일로부터 1년 미만인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임기가 4년인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앞의 1년과 뒤의 1년 동안에는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주민소환투표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4년의 임기 중 중간의 2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넷째, 주민소환의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역구 지방의원으로 하고 있는 점이다. 그래서 비례대표 지방의원이나 선출직 공직자가 아닌 임명직 공직자는 주민소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교육감, 교육위원에 대해서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교육감과 교육의원도 주민소환제의 적용대상으로 되어 있다. 교육위원은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IV. 주민소환제의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풀뿌리 민주주의가 도입된 지 20년이 되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의 도덕성과 자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06년 취임한 민선 4기 기초단체장 230명 가운데 47.8%인 110명이 각종 비리와 위법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들 대부분은 공직선 거법 위반이나 각종 불법과 비리에 연구되어 불명예 퇴진하였다. 비리형태도 이권개입, 인허가비리, 매관매직, 인사비리 등으로 다양하다. 또한 지방의회 5기가 시작된 지난 2006년 7월부터 3년간 비리로 처벌된 지방의원은 전체 738명의 9.6%인 71명, 전체 기초의원 2888명의 5.4% 155명 등 촌 226명에 달한다. 일부 지방의원은 선거법 위반은 물론 도로교통법 등 기본법규 뿐만 아니라 폭력, 상해, 사기, 뇌물, 공문서 위조,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대전일보, 2011년 6월 26일자)

그러나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시행 이후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많은 비리에도 불구하고 단지 지방의원 2명에만 소환이 이루어져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약 3년 동안 26건의 주민소환이 추진되었지만 주민투표로 이행되지 못한 것이 92%인 24건에 달한다는 것은, 주민소환투표의 청구과정이 너무 비현실적임을 나타낸다.

<주민소환 추진 사례(2010.4월 현재)>

구는 시기 지역 소환대상 주신 사유 투표실시(2건) 2007.6 경기하남 시장 제주해군기지 건설 판련 2007.9 경기하남 시장 광가간 직무정지에 따른 시정 공백 2009.5 강원 춘천 시의원 동료 의원 폭행 등 2009.4 전북 전주 시장 시의원 비서 채용의 부직절성 등 2009.1 인천 연수 구청장 사이의원 비서 채용의 부직절성 등 2009.1 전북 전주 시장 자원 해결 기회 등 2009.1 전북 전주 시장 자원 부족, 오만과 무지 등 2008.12 충북 충주 시의원 (지덕기) 관광성 해외연수 2008.1 서울 동대문 구의원 2 지역 재개발사업 이권 개입 등 2008.1 전남 곡성 군의원 의정비 과다 인상, 복지예산 삭감 2007.9 전북 전주 시장 공동주택관리 감독 소홀 2007.9 경남 함양 군수 골프장 등 유치 관련 갈등 2007.9 경남 함양 군수 골프장 등 유치 관련 갈등 2007.9 경남 함양 군수 골프장 등 유치 관련 갈등 2007.9 경남 함양 군수 골프장 등 유치 관련 갈등 2008.1 경북 경주 시장 공약의 미화 한	(구인소환 구선 사데(2010.4월 연세/)								
실시 (2건) 2007.6 2007.9 경기 하남 시장 시의원3 화장장 건립 추진 관련 갈등 2008.7 경기 시흥 시장 장기간 작무정지에 따른 시정 공백 2009.5 강원 춘천 시의원 동료 의원 폭행 등 2009.4 전북 전주 시장 시의원 비서 채용의 부적절성 등 2009.1 인천 연수 구청장 수인선 연수역사 위치 조정 문제해결 기괴 등 2008.12 충북 충주 시의원 (지력기) 관광성 해외연수 등 2008.12 충북 충주 시의원 (지력기) 관광성 해외연수 2008.1 전남 곡성 군의원 2007.9 경남 함양 군수 골프장 등 유치 관련 갈등 2007.7 서울 강북 구청장 개개발 관리・감독 소홀 2007.7 서울 강북 구청장 경주음성 복원계획에 따른 재산권 2008.11 경남 밀양 시장 공약사업 미추진 등 2008.7 전북 암실 군수 군부대 이전 반대 2008.1 전남 장성 군의원 3 납골당 설치 관련 갈등 2007.8 서울 노원 시의원 보급당 설치 관련 갈등 2007.12 서울 사람 구의원 2 의정비 과다 인상 등 2007.12 서울 사람 공무원 무분별 퇴출 등 2007.12 서울 시강 공무원 무분별 퇴출 등 2007.12 서울 시강 공무원 무분별 퇴출 등 2007.12 서울 사람 구의원 2 부당한 압력 행사 등	구분	시기	지역	소환대상	추진 사유				
2007.9 2008.7 경기 하남 시의원3 화장장 건립 추진 관련 같동 2008.7 경기 시흥 시장 장기간 직무정지에 따른 시정 공백 2009.4 전북 전주 시장 시의원 ド료 의원 폭행 등 2009.2 충북 충주 시의원 관광성 해외연수 등 2009.1 인천 연수 구청장 수인선 연수역사 위치 조정 문제 해결 기괴 등 2009.1 전북 전주 시장 자질 부족, 오만과 무지 등 2008.12 충북 충주 시의원 (지덕기) 관광성 해외연수 2008.1 전남 곡성 군의원 의정비 과다 인상, 복지예산 삭감 등 2007.9 전북 전주 시장 공동주택관리 감독 소홀 2007.9 전남 현양 군수 골프장 등 유치 관련 같등 2009.1 경남 함양 군수 골프장 등 유치 관련 같등 2009.1 경남 함양 군수 골프장 등 유치 관련 같등 2009.1 경남 함양 군수 골프장 등 유치 관련 같등 2009.1 경남 일양 시장 경주음성 복원계획에 따른 재산권 취해 등 2009.1 경남 일양 시장 공약사업 미추진 등 2008.10 서울 광진 시의원 뇌물 수수로 구속 수감 2008.11 전남 장성 군의원 4 농업・복지예산 부당한 삭감 등 2007.8 서울 노원 시의원 1 보급당 설치 관련 갈등 2007.8 충남 부여 군의원 3 보조금 예산 부당 지원 2007.12 서울 시장 공무원 무분별 퇴출 등 2007.12 서울 시강 공무원 무분별 퇴출 등 2007.12 서울 시강 공무원 무분별 퇴출 등 2007.12 서울 시강 공무원 무분별 회출 등 2007.12 서울 시강 공무원 무분별 회출 등 2007.12 서울 시강 공무원 무분별 회출 등 2007.1 대전 서구 구의원 2 부당한 압력 행사 등	투표	2009.5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2007.9 지구원 지구원 지구원 지구원 지구원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전		2007.6	 - 경기 하남						
2009.5 강원 춘천 시의원 동료 의원 폭행 등 2009.4 전북 전주 시장 시의원 비서 채용의 부적절성 등 2009.2 충북 충주 시의원 (이종감) 관광성 해외연수 등 2009.1 인천 연수 구청장 수인선 연수역사 위치 조정 문제해결 기피 등 2008.12 충북 충주 시의원 (지덕기) 관광성 해외연수 2008.1 서울 동대문 구의원 2 지역 재개발사업 이권 개입 등 2008.1 전남 곡성 군의원 의정비 과다 인상, 복지예산 삭감 등 2007.9 전북 전주 시장 공동주택관리 감독 소홀 2007.9 경남 함양 군수 골프장 등 유치 관련 갈등 2007.7 서울 강북 구청장 재개발 관리・감독 소홀 2009.4 경북 경주 시장 경주읍성 복원계획에 따른 재산권 취해 등 2008.11 경남 밀양 시장 공약사업 미추진 등 2008.11 경남 밀양 시장 공약사업 미추진 등 2008.10 서울 광진 시의원 뇌물 수수로 구속 수감 2008.7 전북 암실 군수 군부대 이전 반대 2008.1 전남 장성 군의원 4 농업・복지예산 부당한 삭감 등 2007.8 충남 부여 군의원 3 보조금 예산 부당 지원 2007.12 서울 구의원 2 의정비 과다 인상 등 2007.12 서울 지공 공무원 무분별 퇴출 등 2007.12 서울 지공 공무원 무분별 퇴출 등 2007.12 서울 지공의원 2 부당한 압력 행사 등	(21)	2007.9	0.1.10						
2009.4 전북 전주 시장 시의원 비서 채용의 부적절성 등 2009.2 충북 충주 시의원 (이종감) 관광성 해외연수 등 2009.1 인천 연수 구청장 수인선 연수역사 위치 조정 문제해결 기퍼 등 2008.12 충북 충주 시의원 (지덕기) 관광성 해외연수 2008.12 충북 충주 시의원 (지덕기) 관광성 해외연수 2008.1 전남 곡성 군의원 2에적 재개발사업 이권 개입 등 2007.9 전북 전주 시장 공동주택관리 감독 소홀 2007.9 경남 합양 군수 골프장 등 유치 관련 갈등 2007.7 서울 강북 구청장 재개발 관리 · 감독 소홀 2007.7 서울 강북 구청장 재개발 관리 · 감독 소홀 2009.4 경북 경주 시장 경주읍성 복원계획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 2008.11 경남 밀양 시장 공약사업 미추진 등 2008.10 서울 광진 시의원 뇌물 수수로 구속 수감 2008.7 전북 암실 군수 군부대 이전 반대 2008.1 전남 장성 군의원 4 농업 · 복지에산 부당한 삭감 등 2007.8 처울 노원 구의원 3 보조금 예산 부당 지원 2008.1 서울 구로 구의원 3 보조금 예산 부당 지원 2007.1 서울 구로 구의원 2 의정비 과다 인상 등 2007.12 서울 시장 공무원 무분별 퇴출 등 2007.7 대전 서구 구의원 2 부당한 압력 행사 등		2008.7	경기 시흥	시장	장기간 직무정지에 따른 시정 공백				
2009.2 충북 충주 시의원 (이중감) 관광성 해외연수 등 2009.1 인천 연수 구청장 수인선 연수역사 위치 조정 문제 해결 기피 등 2009.1 전북 전주 시장 자질 부족, 오만과 무지 등 2008.12 충북 충주 시의원 (지덕기) 관광성 해외연수 2008.1 전남 곡성 군의원 2 지역 재개발사업 이권 개입 등 2008.1 전남 곡성 군의원 2 지역 재개발사업 이권 개입 등 2007.9 전북 전주 시장 공동주택관리 감독 소홀 2007.9 경남 함양 군수 골프장 등 유치 관련 갈등 2007.7 서울 강북 구청장 재개발 관리 · 감독 소홀 2007.7 서울 강북 구청장 재개발 관리 · 감독 소홀 2009.4 경북 경주 시장 경주옵성 복원계획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 2009.1 강원 인제 군수 공약사업 미추진 등 2008.11 경남 밀양 시장 공약사업 미추진 등 2008.10 서울 광진 시의원 뇌물 수수로 구속 수감 2008.11 전남 장성 군의원 3 보조금 예산 부당한 삭감 등 2007.8 충남 부여 군의원 3 보조금 예산 부당 지원 2008.1 서울 구로 구의원 2 의정비 과다 인상 등 2007.12 서울 시장 공무원 무분별 퇴출 등 2007.7 대전 서구 구의원 2 부당한 압력 행사 등		2009.5	·	시의원	동료 의원 폭행 등				
2009.1 인천 연수 구청장 수인선 연수역사 위치 조정 문제해결 기피 등 2009.1 전북 전주 시장 자질 부족, 오만과 무지 등 2008.12 충북 충주 시의원 (지덕기) 관광성 해외연수 2008.1 서울 동대문 구의원 2 지역 재개발사업 이권 개입 등 2007.9 전북 전주 시장 공동주택관리 감독 소홀 2007.9 경남 함양 군수 골프장 등 유치 관련 갈등 2007.7 서울 강북 구청장 재개발 관리・감독 소홀 2007.7 서울 강북 구청장 재개발 관리・감독 소홀 2009.4 경북 경주 시장 경주읍성 복원계획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 2008.11 경남 밀양 시장 공약사업 미추진 등 2008.11 경남 밀양 시장 공약사업 미추진 등 2008.10 서울 광진 시의원 뇌물 수수로 구속 수감 2008.1 전남 장성 군수 군부대 이전 반대 2008.1 전남 장성 군의원 4 농업・복지예산 부당한 삭감 등 2007.8 충남 부여 군의원 3 보조금 예산 부당 지원 2007.12 서울 지원 2 의정비 과다 인상 등 2007.12 서울 지장 공무원 무분별 퇴출 등 2007.7 대전 서구 구의원 2 부당한 압력 행사 등		2009.4	전북 전주	시장	시의원 비서 채용의 부적절성 등				
2009.1 인선 연구 구항장 해결 기피 등 2009.1 전북 전주 시장 자질 부족, 오만과 무지 등 2008.12 충북 충주 시의원 (지덕기) 관광성 해외연수 2008.1 서울 동대문 구의원 2 지역 재개발사업 이권 개입 등 2008.1 전남 곡성 군의원 의정비 과다 인상, 복지예산 삭감 등 2007.9 전북 전주 시장 공동주택관리 감독 소홀 2007.9 경남 함양 군수 골프장 등 유치 관련 갈등 2007.7 서울 강북 구청장 재개발 관리・감독 소홀 2009.4 경북 경주 시장 경주읍성 복원계획에 따른 재산권 2009.1 강원 인제 군수 공약사업 미추진 등 2008.11 경남 밀양 시장 공약사업 미추진 등 2008.10 서울 광진 시의원 뇌물 수수로 구속 수감 2008.7 전북 암실 군수 군부대 이전 반대 2008.1 전남 장성 군의원 4 농업・복지예산 부당한 삭감 등 2007.8 충남 부여 군의원 3 보조금 예산 부당 지원 2007.12 서울 시장 공무원 무분별 퇴출 등 2007.7 대전 서구 구의원 2 부당한 압력 행사 등		2009.2	충북 충주		관광성 해외연수 등				
2008.12 충북 충주 시의원 (지덕기) 관광성 해외연수 2008.1 서울 동대문 구의원 2 지역 재개발사업 이권 개입 등 2008.1 전남 곡성 군의원 의정비 과다 인상, 복지예산 삭감 등 2007.9 전북 전주 시장 공동주택관리 감독 소홀 2007.9 경남 함양 군수 골프장 등 유치 관련 갈등 2007.7 서울 강북 구청장 재개발 관리ㆍ감독 소홀 2009.4 경북 경주 시장 경주읍성 복원계획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 2009.1 강원 인제 군수 공약사업 미추진 등 2008.11 경남 밀양 시장 공약사업 미추진 등 2008.10 서울 광진 시의원 뇌물 수수로 구속 수감 2008.7 전북 암실 군수 군부대 이전 반대 2008.1 전남 장성 군의원 4 농업ㆍ복지예산 부당한 삭감 등 2007.8 충남 부여 군의원 3 보조금 예산 부당 지원 2008.1 서울 구로 구의원 2 의정비 과다 인상 등 2007.12 서울 시장 공무원 무분별 퇴출 등 2007.7 대전 서구 구의원 2 부당한 압력 행사 등		2009.1	인천 연수	구청장					
1		2009.1	전북 전주	시장	자질 부족, 오만과 무지 등				
지수 기상		2008.12	충북 충주		관광성 해외연수				
2008.1 전념 녹양 군의원 등		2008.1	서울 동대문	구의원 2	지역 재개발사업 이권 개입 등				
미투표 종결 (24건) 2007.9 경남 함양 군수 골프장 등 유치 관련 갈등 2007.7 서울 강북 구청장 재개발 관리·감독 소홀 2009.4 경북 경주 시장 경주읍성 복원계획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 2009.1 강원 인제 군수 공약 미이행, 방만한 군정 운영 등 2008.11 경남 밀양 시장 공약사업 미추진 등 2008.10 서울 광진 시의원 뇌물 수수로 구속 수감 2008.7 전북 암실 군수 군부대 이전 반대 2008.1 전남 장성 군의원 4 농업·복지예산 부당한 삭감 등 2007.8 충남 부여 군의원 3 보조금 예산 부당 지원 2008.1 서울 구로 구의원 2 의정비 과다 인상 등 2007.12 서울 시장 공무원 무분별 퇴출 등 2007.7 대전 서구 구의원 2 부당한 압력 행사 등		2008.1	전남 곡성	군의원					
2007.7 서울 강북 구청장 재개발 관리ㆍ감독 소홀 2009.4 경북 경주 시장 경주읍성 복원계획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 2009.1 강원 인제 군수 공약 미이행, 방만한 군정 운영 등 2008.11 경남 밀양 시장 공약사업 미추진 등 2008.10 서울 광진 시의원 뇌물 수수로 구속 수감 2008.7 전북 암실 군수 군부대 이전 반대 2008.1 전남 장성 군의원 4 농업ㆍ복지예산 부당한 삭감 등 2007.8 청남 부여 군의원 3 보조금 예산 부당 지원 2008.1 서울 구로 구의원 2 의정비 과다 인상 등 2007.12 서울 시장 공무원 무분별 퇴출 등 2007.7 대전 서구 구의원 2 부당한 압력 행사 등		2007.9	전북 전주	시장	공동주택관리 감독 소홀				
(24건) 2009.4 경북 경주 시장 경주읍성 복원계획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 2009.1 강원 인제 군수 공약 미이행, 방만한 군정 운영 등 2008.11 경남 밀양 시장 공약사업 미추진 등 2008.10 서울 광진 시의원 뇌물 수수로 구속 수감 2008.7. 전북 암실 군수 군부대 이전 반대 2008.1 전남 장성 군의원 4 농업・복지예산 부당한 삭감 등 2007.8 서울 노원 기의원 1 구의원 3 보조금 예산 부당 지원 2008.1 서울 구로 구의원 2 의정비 과다 인상 등 2007.12 서울 시장 공무원 무분별 퇴출 등 2007.7 대전 서구 구의원 2 부당한 압력 행사 등		2007.9	경남 함양	군수	골프장 등 유치 관련 갈등				
2009.4 경북 경주 시장 경수급성 목원계획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 2009.1 강원 인제 군수 공약 미이행, 방만한 군정 운영 등 2008.11 경남 밀양 시장 공약사업 미추진 등 2008.10 서울 광진 시의원 뇌물 수수로 구속 수감 2008.7. 전북 암실 군수 군부대 이전 반대 2008.1 전남 장성 군의원 4 농업・복지예산 부당한 삭감 등 2007.8 성물 노원 시의원 1		2007.7	서울 강북	구청장	재개발 관리·감독 소홀				
2008.11 경남 밀양 시장 공약사업 미추진 등 2008.10 서울 광진 시의원 뇌물 수수로 구속 수감 2008.7. 전북 암실 군수 군부대 이전 반대 2008.1 전남 장성 군의원 4 농업 · 복지예산 부당한 삭감 등 2007.8 서울 노원 시의원 1 구의원 3 납골당 설치 관련 갈등 2007.8 충남 부여 군의원 3 보조금 예산 부당 지원 2008.1 서울 구로 구의원 2 의정비 과다 인상 등 2007.12 서울 시장 공무원 무분별 퇴출 등 2007.7 대전 서구 구의원 2 부당한 압력 행사 등	(2441)	2009.4	경북 경주	시장	경주읍성 복원계획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				
2008.10 서울 광진 시의원 뇌물 수수로 구속 수감 2008.7. 전북 암실 군수 군부대 이전 반대 2008.1 전남 장성 군의원 4 농업ㆍ복지예산 부당한 삭감 등 2007.8 서울 노원 시의원 1 구의원 3 납골당 설치 관련 갈등 2007.8 충남 부여 군의원 3 보조금 예산 부당 지원 2008.1 서울 구로 구의원 2 의정비 과다 인상 등 2007.12 서울 시장 공무원 무분별 퇴출 등 2007.7 대전 서구 구의원 2 부당한 압력 행사 등		2009.1	강원 인제	군수	공약 미이행, 방만한 군정 운영 등				
2008.7. 전북 암실 군수 군부대 이전 반대 2008.1 전남 장성 군의원 4 농업 · 복지예산 부당한 삭감 등 2007.8 서울 노원 시의원 1		2008.11	경남 밀양	시장	공약사업 미추진 등				
2008.1 전남 장성 군의원 4 농업 · 복지예산 부당한 삭감 등 2007.8 서울 노원 시의원 1 구의원 3 납골당 설치 관련 갈등 2007.8 충남 부여 군의원 3 보조금 예산 부당 지원 2008.1 서울 구로 구의원 2 의정비 과다 인상 등 2007.12 서울 시장 공무원 무분별 퇴출 등 2007.7 대전 서구 구의원 2 부당한 압력 행사 등		2008.10	서울 광진	시의원	뇌물 수수로 구속 수감				
2007.8 서울 노원 시의원 1 구의원 3 납골당 설치 관련 갈등 2007.8 충남 부여 군의원 3 보조금 예산 부당 지원 2008.1 서울 구로 구의원 2 의정비 과다 인상 등 2007.12 서울 시장 공무원 무분별 퇴출 등 2007.7 대전 서구 구의원 2 부당한 압력 행사 등		2008.7.	전북 암실	군수	군부대 이전 반대				
2007.8 지물 도원 구의원 3 법을장 설치 단단 실증 2007.8 충남 부여 군의원 3 보조금 예산 부당 지원 2008.1 서울 구로 구의원 2 의정비 과다 인상 등 2007.12 서울 시장 공무원 무분별 퇴출 등 2007.7 대전 서구 구의원 2 부당한 압력 행사 등		2008.1	전남 장성	군의원 4	농업 · 복지예산 부당한 삭감 등				
2008.1서울 구로구의원 2의정비 과다 인상 등2007.12서울시장공무원 무분별 퇴출 등2007.7대전 서구구의원 2부당한 압력 행사 등		2007.8	서울 노원		납골당 설치 관련 갈등				
2007.12 서울 시장 공무원 무분별 퇴출 등 2007.7 대전 서구 구의원 2 부당한 압력 행사 등		2007.8	충남 부여	군의원 3	보조금 예산 부당 지원				
2007.7 대전 서구 구의원 2 부당한 압력 행사 등		2008.1	서울 구로	구의원 2	의정비 과다 인상 등				
		2007.12	서울	시장	공무원 무분별 퇴출 등				
2007.7 광주 광산 구청장 노점상 단속 부담		2007.7	대전 서구	구의원 2	부당한 압력 행사 등				
		2007.7	광주 광산	구청장	노점상 단속 부담				

출처: 대전일보(2011.3.16일자)

2. 문제점

2007년 선출직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법이 발효돼 선거법 위반을 비롯한 비리연루 및 특혜의혹, 자질 문제 등 비판의 대상이 되는 단체장의회의원 등을 주민들이 직접 소환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엄격한 절차와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 유효 투표인 수 등이 너무 많이 실효성이 떨어진다. 주민소환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주민이 쉽게 발의할 수 없도록 조건을 까다롭게 해 놓았기 때문이다. 현재 주민소환은 청구권자의 과다로 인해 특정단체나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이 아니면 사실상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주민참정의 주체인 주민들이 제도에 대해 올바르게 알지 못해 활용도가 낮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기 위한 서명인수를 점검해야 한다. 우리의법은 선출직 지방공직자별로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청구 서명인 수를 다르게 정하였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시장과 도지사의 경우 해당 지역 전체 유권자의 10% 이상이 찬성하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고,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각각 15% 이상과 20%이상이다. 이런 요건은 일본보다는 완화된 것이지만 미국보다는 강화된 요건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남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하여 관할구역 안의 시·군·자치구 수가 3개 이상인 시·도지사의 경우 3분의 1 이상의 시·군·자치구에서 정해진 수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하였다. 시장·군수·자치구청장과 지역구지방의원도 시·도지사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서명을 발위하는 주체가 개인이 아닌 주로 단체인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시민단체활동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 서명인수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서명기간에 관한 사항이다. 서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특이한 점은 서명기간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서명을 수집하는 1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일본의 경우 해작해산청구서가 접수되어 청구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였다는 것을 고시한 날의다음날부터 도도부현의 경우에는 2개월이내에, 시정촌의 경우에는 1개월이내에 서명을받아야한다(하승수 2006). 우리의 경우에는 서명을 수집할수 있는 기간이 시도지사의경우에는 증명서 교부 사실이 공표된 날부터 120일이내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는 60일이내로 정해져 있다. 서명수집기간은 효율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기간이 짧다면 그기간내에 서명을 모으는 것이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에도 120일로 서명수집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주민들의 의식도 주민소환제를 정착시키는데 성숙하지 못하다. 유권자들은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고, 성숙한 시민의식도 결여되어 있다.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다보니 단체장들이나 지방의원들의 비리 등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환사유는 도덕성·자질, 부패비리와 같은 사회적 관심과 비판이 집중되는 사유의 경우 주민들의 참여는 소극적인 반면, 주민의 개인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적극적 참여사유가 된다(현근 2009).

V. 논쟁점

주민소화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첫째, 주민소환의 대상의 문제이다. 소환의 실행가능성 차원에서 현재는 서명요건이 현실에 비해 엄격하다. 해외연수 중 성매매 의혹을 샀던 어느 지자체 의원의 경우에도 법정 서명인수를 채우지 못해 주민소환이 무산된 경우도 있다. 주민소환의 청구요건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완화하는 경우에는 정치적·행정적인 불안정이 야기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엄격하면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진다. 주민소환제도가 남용되는 폐단이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주민소환의 청구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설정하여 제도를 사실상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도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유권자 10-20%의 서명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도시의 區보다는 농촌의 郡단위가 서명을 얻기가 용이하다.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와 남용방지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도 광역시와 사도를 구분하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구와 군을 구분해서 서명요건을 달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민소환청구를 위한 유권자의 비율이 같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그 실현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서명비율을 낮추고, 반대로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비율을 유지하는 것을 검토함 필요가 있다.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의 발의요건도 완화될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장은 1인인데 비해 지방의원은 다수임으로, 주민소환이 결정되었다 해도 집행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의회의 운영에는 커다란 영향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의원에 대한 발의요건이 단체장에 비해 엄격하다는 것은 형평성과 실효성의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지방의원에 대한 발의는 주민이 개개의 지방의원에 대해 하도록 하되, 형평성의 차원에서 당해 지방의원에 변한 발의는 주민이 개개의 지방의원에 대해 하도록 하되, 형평성의 차원에서 당해 지방의원의 선거구의 유권자수에 따라 서명비율에 차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권자가 많은 선거구의 경우에는 정해진 서명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의요건을 완화하는 것을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민소환 청구대상의 형평성의 문제이다. 현행 법률 제7조에서는 주민소환의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으로 국한되어 있다. 주민소환제가 선출직에 대한 주민의 정치적 판결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역차원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 교육감,

지방자치 20년 기념 토론회

교육위원에 대한 주민소환도 인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 가운데에서도 비례대 표의원은 소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비례대표의원도 대상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차원에서 주민소환의 대상이라고 주장할수는 없다.

셋째, 주민소환의 사유 제한여부와 관련된 문제이다. 현행 법률 7조에는 청구절차만 명시되어 있고, 청구사유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다. 반대입장에서는 주민소환 투표대상자에 대한 구체적 청구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주민소환청구가 남발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경고한다. 반면 현행 법률의 유지를 주장하는 논거로는 ①주민소환제도는 대상자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추구하는 제도가 아니고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청구사유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는 없다는 점, ②선거가 정치적 행위인 것과 마찬가지로 소환도 주민의 정치적 결정의 성격이 지닌다는 점, ③주민소환제에 관한 보편적인 입법원칙에 반한다는 점, ④업법기술상 주민소환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 ⑤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으로 주민소환의 사유를 제한하면 결국 주민소환을 사법적 절차로 변질시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인다는 점, ⑥주민소환 대상에 포함되는 지에 대한 판단은 유권자가 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이기한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소환이 남용될 경우,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하거나 당리당략적으로 악용되고,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있다.14) 최소한 주민소환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지방행정은 혼란에 빠지고 과다한 예산낭비를 가져오게 되고 지역의 중요한 결정이 자동 유보되는 등 폐해가 클 수 있다. 또한 자치단체장들의 소신행정이나 역점사업 추진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또한 국가사업의 경우도 지역이기주의 차원에서 일관되게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다. 비리, 부패, 위법한 행위 이외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소송제15), 주민참여예산제 등 다른 주민참여기제를 통해서 예방과 감시를 할 수있다. 이에 따라 주민제한의 사유를 "이런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식의 포함적 표현이 아니라, "이런 성격에 한하여는 적용될 수 없다"는 식의 배제적 조항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40

¹⁴⁾ 이기한은 현행 법률로도 주민소환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이기한(2008) 참조

¹⁵⁾ 주민소송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및 회계 처리가 잘못되었을 때에 주민들이 직접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낭비한 예산을 환수하는 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이다.

<참고문헌>

이기한(2008), 한국의 주민소환제도의 입법방향, 『중앙법학회』, 제10권 제2호.

이원희.(2004). 참여적 지방재정 운영방향. 대전경실런,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 예산의 이해. 육동일(2008), 대전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의 성공적인 운영전략. 대전광역시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정세욱(2005). 지방자치학. 법문사.

하승수(2006), 주민소환제도의 특징과 시민사회에 주는 함의, 『시민사회와 NGO)』, 제4권 제2호 현근(2009), 주민소환 청구주체와 소환대상의 활동사례 비교연구, 『지방행정연구』, 제23권 제4호

41

지방자치 20년 기념 토론회

현재 전국적으로 관심이 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관한 자료 2개를 활발한 토론을 위한 참고자료로 덧붙입니다. 첨부1은 현재 충청남도의회에서 계류중에 있는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입니다. 첨부2는 2011년 6월 1일에 서울에서 열린 "참여예산을 상상하라" 전국 워크샵에서 제안된 조례안입니다. 참고로 올해 9월 9일부터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의무적으로 실시되게 되었습니다.

<첨부1>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¹⁶⁾

의 안 제 번 호 호

제출연월일 2011. . . 제 출 자 충청남도지사

1. 제정이유

-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증대
-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¹⁶⁾ 도지사에 의해 발의되어 현재 의회에서 보류된 조례안임.

- 가.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의 목적(안 제1조)
-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O 이 조례에서 "도민"의 범위 규정
- 다. 법령준수의무, 도지사의 책무 및 도민의 권리(안 제3조~제5조)
- 예산편성의 도민참여 과정에서 관계법령을 지키도록 함
- 도지사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정보공개와 도민참여 보장 노력
- 도민은 누구나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라.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안 제6조)
- 도지사는 도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함마. 의견수렴 절차 및 결과 공개(안 제7조~제9조)
-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및 인터넷 설 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 수렴할 수 있도록 함
- 바. 도민참여예산위원회(안 제10조~제20조)
- O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을 함
- O 위원회는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함
- 위원은 도지사 등이 추천하는 자와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자를 도지사가 위촉
- O 도의 업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운영
- O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둠
- O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
- O 예산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사. 시행규칙(안 제21조)

지방자치 20년 기념 토론회

○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의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도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2. 도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
- 3. 도내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도민참여 절차· 방법 등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도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도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4

- 제5조(도민의 권리) 도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도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도지사는 예산편성방향, 도민참여 예산의 범위, 도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도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8조(의견 제출 방법)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도민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도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결과 공개) 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도민참여예산위원회) 도지사는 도 예산의 편성과정에 도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도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 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지방자치 20년 기념 토론회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다.
- 1. 도지사가 추천한 자
- 2. 시장・군수가 추천한 자
- 3. 도의회에서 추천한 자
-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자
- ③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도민의 의견 수렴· 집약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도의 업무 분야별로 구성한다.
-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 ④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선임 부서 주무사무관이 된다.

- 제15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 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하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1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편성 의견수렴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 ② 도지사가 위원회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8조(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4. 위원회 운영취지·원칙·목적·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지방자치 20년 기념 토론회

- 제19조(위원에 대한 교육) 도지사는 위원회 위원 또는 참여를 원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과정과 도민참여 방법·위원회 운영 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예산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20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도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남도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2> ○○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¹⁷⁾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시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시에 거주하거나 ○○시에서 일하고 배우며, 법인·비영리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주민참여예산제는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민주성 확보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참여민주주의 활성화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 (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 ①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 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 한다)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 예산 관련 편성내용을 공개하다.
- ③ 시장은 총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 ④ 매년 참여예산의 범위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지방자치 20년 기념 토론회

제6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 (교육·홍보·토론 및 주민참여)

- ① 시장은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시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 및 토론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주민들이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한다.
- ② 시장은 시의 주요사업과 예산편성에 대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예산편성의 주민참여에 대한 평가토론회를 진행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1항에 의해 설명·교육·홍보 및 토론활동 등에 대해 매년 계획을 수립·작성하여 공개한다.

제2장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제8조 (구성 및 운영)

- ① 시장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 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 ② 지역회의는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장,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구성한다. 단, 주민차지위원 및 통장의 수가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한다.
- ③ 지역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참석자에 대하여 예산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기타 지역회의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주민참여예산추진단이 담당한다.

제9조 (회의소집 및 의결)

- 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 ② 지역회의는 최소 20인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일반주민의 지역회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제10조 (기능)

¹⁷⁾ 이 조례안은 지난 6월 1일 열린 "참여예산을 상상하라" 전국 워크샵에서 제안된 조례 안입니다.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 2. 지역 내 예산제안 내용과 우선순위에 대한 의결
- 3. 기타 지역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3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 ① 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의 구성 시 성별, 연령별, 계층별, 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
- ③ 위원회의 구성은 00인 이내로 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 위원의 1/2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동별 1명으로 한다.
-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
- 2.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주민
- 3.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주민

제12조 (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 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15일 이상 공보와 시 홈페이지, 시·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자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하고, 모집인원 초과 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선정된 자 중에서 제7조에 의한 예산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3.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4. 기타 그 직의 직무를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 20년 기념 토론회

경우

④ 보궐 위원은 잔임 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만 모집하되, 다만 해촉 된 위원이 총위원의 1/5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

- ① 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 간사1인을 둔다.
- ②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했한다.
-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 (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 6. 시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행사 범위 내에서 활동

제16조 (분과위위회)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17조 (총회)

- ① 위원회는 총회를 개최하여 각 분과 등을 통해 심의·조정한 예산안을 시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종합적으로 심의·조정·의결한다.
- ② 총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의결은 참여 위원 과반수

- 이상의 동의로 성립된다.
- ③ 총회에는 일반 주민과 공무원 등이 참여할 수 있으나, 위원들 이외에는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제1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사업 등 예산에 대한 의견제출
- 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출
- 3.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방문,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등의 활동
- 4. 주민 및 지역회의 의견 심의, 조정
- 5. 예산편성안에 대한 심의·조정
- 6. 총회·분과위원회 참여
- 7. 결산에 대한 설명회 참여
- 8. 기타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9조 (회의소집 및 의결)

-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하되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매년 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 총회 등을 진행한다.
- 2. 지역회의를 통해 수렴된 주민의 의견은 분과위원회가 있는 경우 분과위원회를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지역회의 의견조정,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조정 등 위원회의 최종 의견은 시장과 관련공무원이 배석하는 총회를 거친 후시에 제출되어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회의록 공개의 원칙)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비공개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53

지방자치 20년 기념 토론회

제21조 (자료 제출 및 협조)

- ① 시장은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당해 위원회 (또는 위원)에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장 주민참여예산추진단

제22조 (구성 및 운영)

- ① 본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추진단(이하 '추진단') 을 구성·운영한다.
- ② 추진단은 시의회 의원, 예산 관련 전문가, 관련 분야 종사자, 비영리민간 단체 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추진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를 둔다.
- ④ 추진단장, 부단장은 추진단 구성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 예산담당 이 담당하되 민간인 실행간사를 둘 수 있다.
- ⑤ 단장과 부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단장·부단장·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⑥ 단장은 추진단 업무를 총괄하고 추진단을 대표한다.
- ⑦ 부단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 무를 대행한다.
- ⑧ 간사는 추진단 사무를 처리한다.

제23조 (회의소집 및 의결)

- ① 단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필요할 때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되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추진단은 재적단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규칙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 2. 예산교육, 참여예산제 홍보, 예산관련 토론회·공청회 개최 등에 대한 활동
- 3.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등 참여예산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활동
- 4. 시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모색
- 5.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 6. 기타 추진단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5조 (재정 및 실무지원)

- ① 시장은 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지역회의, 위원회, 추진단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